

(신 설)

8. 위생분야

직명(위) 및 業務區分	職 級	職務內容	任 用 自 格	根 據
영 양 사	8급 상당	區內食堂 給食管理	영양사 자격증 소지자	

(신 설)

9. 기타분야

직명(위) 및 業務區分	職 級	職務內容	任 用 自 格	根 據
광 고 물 관 리 원	7급 상당	옥외광고 물 관리	1. 4년제 대학이상졸업 자로서 관련학과를 이 수한 자 2. 專門大學이상 졸업자 로서 관련분야 勤務經 歷이 4년이상인 자 3.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로서 관련분야 經歷이 6년이상인 자	

서울特別市麻浦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 麻浦區 行政權限 委任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별지 위임사무중 “36.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”란 다음에 “37.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7. 적출물 처리업자 指定 및 지 정취소 등 指導監督	• 의료법 第 17條 • 적출물 등 處理規則 第3條 및 第9條	재위임	保健所長
--	---	-----	------

부 칙

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제명 “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”를 “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組織·運營에 관한條例”로 한다.

第2條中 “다음 각호의 事項을 審議한다”를 “다음 각호의 業務를 管장한다”로 한다.

第3條第1項中 “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委員으로”를 “부의장을 포함한 委員 15인 이내로”하며 同條 第2項중 “부의장은 教育에 종사하는 委員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부의장은 教育廳 教育長 또는 學校長을 한다”로 하고 同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委員은 麻浦區生活體育協議會 회장 및 地域社會 體育進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장, 기업체, 기타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第6條第2項중 “본기별로”를 “반기별”로 하고 同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會議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委員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.

第7條第1項중 “간사와”를 “간사1인과”로 하며, 同條 第2項중 “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”를 “생활체육과장이 된다”로 하고, 同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